

#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0. 14) 상정
-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0. 14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조 재 형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시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교부, 우편, 전자송달로 개정하는 것이며,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개정한 것은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상황에 맞게 이용토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, 전자(이메일) 송달을 새로 신설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납세고지 등의 송달방법을 변경함.(안 제17조제1항)
  - 서류의 송달: 교부 또는 등기우편 →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- 전자송달(이메일)로 인한 납세자 불편 대책은?	- 기존 등기우편 제도를 포함하여 전자 송달을 추가하는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  있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  있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  있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  있음

## 부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5호
의결 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5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교부, 우편, 전자송달로 개정하는 것이며,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개정한 것은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상황에 맞게 이용토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, 전자(이메일) 송달을 새로 신설한 것임

## □ 주요내용

가. 납세고지 등의 송달방법을 변경함.(안 제17조제1항)

- 서류의 송달: 교부 또는 등기우편 → 교부·우편 또는 전자 송달

## 부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. 다만, 법에 의하여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 고지서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7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